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083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허기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성

변 론 종 결 2022. 2. 17.

판 결 선 고 2022. 3. 31.

제1 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합100364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4.부터 2022.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지연손해금 확장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인정근거] 란에 ‘갑 5, 19호증, 을6, 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6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2938)1) 에서 ‘채무자의 2014. 2. 25.자 J은행과의 대출계약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신용보증계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민법 제832조에 따라 채무자와 연대하여 대출금채무 내지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연대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5행 ~ 제7면 9행 중 항목 번호 ‘1)’을 ‘2)’로, ‘2)’를 ‘3)’으로, ‘3)’을 4)’로 각 고쳐 쓴다.

3. 판단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의부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8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한편,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63 판결 등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라는 파산재단 증식의 형태로 흡수시킴으로써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에서의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등 참조),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과 파산재단의 충실을 해하는 파산자의 처분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특정 채권자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파산자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처분행위일지라도, 그것이 그 특정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 초래 여부 내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부인의 소에 있어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재산분할의 고의부인 인정여부

1) 분할 대상 재산

가)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채무자의 적극재산: 280,368,955원

(1) 2017. 8. 9. 기준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1,368,95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내용	가액(원)
1	서울 영등포구 L건물 제12층 M호 임대차보증금	20,000,000
2	서울 영등포구 L건물 제12층 N호 임대차보증금	22,000,000
3	서울 강서구 O아파트 P호 임차보증금	10,000,000
4	Q회사 R보험	955,165
5	S회사 T보험	6,169,590
6	U회사 V	435,212
7	W회사 X보험	786,943
8	Y회사 Z보험	278,543
9	J은행 예금	700,000
10	기업은행 예금	2,512
11	AA은행 예금	7,911
12	AA은행 예금	33,014
13	AB은행 예금	16
14	AB은행 예금	49
	합계	61,368,955

(2) 나아가 채무자가 E 아파트의 처분대금 중 219,000,000원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재산분할의 기준일을 이혼성립일로 보는 이상 채무자가 이혼성립일 당시 위 금원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를 이혼성립일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본다(이렇게 보지 아니하면 이혼성립일 당시 이미 분할을 마친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리고 없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적정한 범위를 넘어선 재산분할이 있어도 이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당하게 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19,000,000원을 수령한 이후, 즉 혼인관계

파탄 이후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280,368,955원(61,368,955원 + 219,000,000원)이 된다.

다) 채무자의 소극재산: 1,123,563,051원

(1) J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70,000,000원: 85,000,000원 인정채무자가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4. 2. 25. J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채무가 채무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는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170,000,000원을 F아파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고, 채무자와 피고는 F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기초사실에다가 을5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사건에서 피고 역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1심 판결 후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한편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가 채무자에게 F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중 8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위 채무 170,000,000원에 대한 채무자와 피고의 각 부담비율(50:50) 상당액으로 보이는 점(피고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서는 채무자와 피고가 위 채무 중 각각 85,000,000원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J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70,000,000원 중 85,000,000원만을 채무자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한다.

(2)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359,575,259원 및 270,000,000원: 인정갑37호증, 을1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1. 12. 12. 및 2013. 4. 25.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D의 대출채무(각 376,000,000원 및 300,000,000원)를 각 보증한 사실,

2017. 8. 9. 기준 보증채무액이 각 359,575,259원 및 270,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2) 피고는, 위 채무가 채무자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와 피고는 채무자가 D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주로 생활하였고, 피고는 가사노동을 하면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채무 발생의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 채무는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피고도 이를 용인하였던 채무로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아래 소극재산 중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소극재산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각 항목에서 별도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인정

갑37호증, 을138, 139, 1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07. 1. 30.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D의 대출채무(당초 대출액 50,000,000원은 이후 2009. 9. 25. 1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가 2011. 6. 9. 2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를 보증한 사실, 2016. 5. 27. D이 채무자의 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2007. 1. 30.자 대출채무를 변제한 사실, 2017. 8. 9. 기준 2016. 5. 27.자 대출에 관한 보증채무액이 200,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2016. 5. 27.자 대출에 관한 보증채무 200,000,000원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5. 27.자 대출은 2007. 1. 30.자 대출과는 대출과목, 이자율, 원금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이 상이한 동일성 없는 경계계약으로서, 2016. 5. 27.자 대출에 관한 보증채무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자가 새로이 부담한 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며,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 1. 30.자 대출의 연장된 대출만기일인 2016. 5. 27. 새로 실행된 대출금으로 2007. 1. 30.자 대출금이 변제되는 등 2016. 5. 27.자 대출은 2007. 1. 30.자 대출을 변제하기 위하여 실행된 것인 점, ② 위 두 대출은 이자율과 상환방법만 다를 뿐 주채무자 및 보증채무자가 동일하고 대출금액 및 보증한도액이 동일하며 대출과목도 중소기업자금대출(상품명: 기타중소운전자금대출, 과목코드: 1070111125)로 동일한 점, ③ 상호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대출이라면 대출받는 쪽에서 각 대출에 관한 담보설정비를 부담하도록 정하였을 것인데, 선 대출인 2007. 1. 30.자 대출에 관한 담보설정비는 고객(D)부담으로 하였지만, 후 대출인 2016. 5. 27.자 대출에 관한 담보설정비는 은행부담으로 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 5. 27.자 대출이 2007. 1. 30.자 대출과 상이한 동일성 없는 경계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16. 5. 27.자 대출은 2007. 1. 30.자 대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선 대출에 관한 보증채무자가 경계에 해당하는 후 대출에 관하여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0,000,000원: 인정

갑37호증, 을142, 143, 14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2. 8. 30.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D의 대출채무(당초 대출액 200,000,000원은 이후 2013. 5. 8. 일부 원금이 회수되어 2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를 보증한 사실, 2017. 8. 9. 기준 보증채무액이 20,000,000원인 사실(이후 2017. 8. 30. D이 채무자의 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000,000원을 대환대출을 받은 돈 등으로 위 2012. 8. 30.자 대출채무를 변제하였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가 위 (3)항에서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나, 재산분할 기준시인 2017. 8. 9. 기준 2012. 8. 30.자 대출에 관한 보증채무액이 20,000,000원임이 확실하고, 대출원장에 2017. 8. 30.

대한대출에 의해 회수되었음이 명확히 등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96,580,000원: 불인정

을1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7. 10. D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2017. 8. 9. 기준 대출채무액이 196,58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 대출에 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는 한편, 갑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채권자목록에도 위 채무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J은행에 대한 채무 79,617,230원: 인정

갑50, 51호증, 을1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3. 8. 30. J은행에 대하여 D의 대출채무(당초 대출한도액 100,000,000원)를 보증한 사실, 2017. 8. 9. 기준 대출채무 내지 보증채무액이 79,617,23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7) AC에 대한 채무 20,140,562원: 인정

갑3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5. 4. 28. AC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채무자와 피고가 2015. 1. 말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부터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서로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2015. 1. 말경 이후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12, 19,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채무자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2015. 1. 말경부터 파탄에 이르러 공동경제생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AC에 대한 채무 2,085,810원, AD은행에 대한 채무 70,000,000원, AA은행에 대한 채무 2,989,264원 및 13,117,296원: 불인정

원고는 위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갑3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는 AC에 대하여 2016. 2. 17.,

AD은행에 대하여 2016. 11. 4., AA은행에 대하여 2016. 12. 14. 위 각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와 피고는 2015. 7. 30. 이 사건 합의를 한 이후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무는 채무자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9)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69,250,000원, 19,980,000원: 인정

갑37, 4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합의 이전인 2014. 4. 3. 및 2015. 1. 19.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D의 대출채무(각 100,000,000원 및 80,000,000원)를 각 보증한 사실, 2017. 8. 9. 기준 보증채무액이 각 69,250,000원 및 19,98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10)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 70,720,000원: 불인정

기초사실에다가 갑37, 4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가 2015. 8. 28.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D의 대출채무(100,000,000원)를 보증하였고, 2017. 8. 9. 기준 보증채무액이 70,720,000원인 점, 그러나 채무자와 피고는 2015. 7. 30. 이 사건 합의를 한 이후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2022. 2. 15.자 준비서면) 위 채무는 기존 채무에 대한 대환채무가 아니라 신규채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채무는 채무자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로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1) 사채 100,000,000원: 불인정

원고는 위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37,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는 2015. 7.경부터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대여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위 채무는 2017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채무가 채무자와 피고의 혼인생활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적극재산: 495,257,032원3) (1) F아파트 830,000,000원: 불인정(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인정)원고는, 피고가 2017. 7. 31. F아파트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합계 39,000,000원을 납부하였고, 39,000,000원은 채무자의 사업소득으로 형성된 돈이므로 F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아파트는 피고가 2017. 4. 26. H으로부터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으로서 설령 F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피고가 채무자의 사업소득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F아파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와 피고의 공동재산이라고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F아파트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F아파트에 관한 2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은 여전히 분할의 대상이 된다(경제적으로 볼 때 피고는 H으로부터 F아파트의 가치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한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여전히 위 임대차보증금은 이혼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4) (2) 이 사건 차량 15,000,000원: 불인정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이다.

(3) AE 계좌 196,562,640원: 인정

갑20호증의 2, 2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20. 6. 4.자 A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 24. AE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2016. 2. 29.경부터 주식거래를 한 사실, 2017. 8. 9. 위 계좌에 예수금 19,913,060원 및 평가금액 176,649,580원 상당의 주식(합계액 196,562,640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초사실, 갑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채무자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위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2015. 11. 23. 지급받은 E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된 자본금으로 하여 주식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예수금 채권 및 주식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예수금 및 주식의 부모인 H, AF로부터 대여받은 돈 등으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AG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6,101,008원, 144원, 216원 및 AH 예상 해지환급금

13,593,024원: 인정

갑32, 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2020. 6. 8.자 AG은행 및 AH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자와 혼인 중 A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를 보유하고 있던 사실, 2017. 8. 9. 기준 위 각 AG은행 계좌의 잔액이 26,101,008원, 144원, 216원인 사실, 피고는 2008. 3. 27. AH과 'AI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의 2017. 8. 9. 기준 예상 해지환급금이 13,593,02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예금채권 및 해지환급금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채무자와 피고가 2015. 1. 말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부터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서로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위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채무자와 혼인생활 중 위 각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H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대납액 39,000,000원: 인정

갑31호증의 1, 갑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 31. H의 F아파트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합계 39,000,000원을 대납한 사실, 이는 피고의 AE 계좌에서 인출한 5,000,000원, AE 계좌에서 AG은행 계좌로 이체된 2017. 7. 28.자 30,000,000원 및 2017. 7. 31.자 3,000,000원 등으로 납부된 사실(피고도 2021. 9. 15.자 및 2021. 10. 25.자 준비서면 등을 통해 이를 자인하였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AE 계좌의 금원(예수금 채권 및 주식)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대납액은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서 피고가 여전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피고가 F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위 대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H에 대해 대납금 상당의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대납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와 H은 F아파트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중 10,000,000원만을 H이 부담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H은 피고가 양도소득세, 증여세 합계 39,000,000원을 납부한 이후인 2017. 8. 28. 및 2017. 9. 8.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대납액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구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부담부 증여계약서(갑12호증)에도 피고가 H의 대출채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만이 부담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피고는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서 2021. 9. 15.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주장을 새로이 하기 전까지 H에 대한 대납금 상당의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이는 자신의 특유재산인 AE 계좌의 금원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위 대납금 상당의 반환청구권 역시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을 뿐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의 소극재산: 85,000,000원

앞서 3. 나. 1) 다)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채무자 명의의 J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70,000,000원 중 85,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채무자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한다.

바) 소결

따라서 채무자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 432,937,064원(= 채무자 적극재산 280,368,955원 - 채무자 소극재산 1,123,563,051원 + 피고 적극재산 495,257,032원 - 피고 소극재산 85,000,000원)이다.

2) 고의부인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9면 12행의 증거 실시 부분에 ‘을3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1면 10행, 제22면 3행 각 ‘150,000,000원’을 각 ‘2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부인권 행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항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 3. 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문호, 판사 이양희, 판사 김경애

1)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845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2018. 12. 24. 중소기업은행에 위 보증채무 중 322,007,334원 및 250,470,219원을 각 대위변제 하였는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무는 위 보증채무와 중첩되므로 별도로 분할대상으로 삼지 아니함이 상당하고, 원고 역시 같은 취지에서 주장을 정리하였다.

3) 피고가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E 아파트 매매대금 중에서 취득한 것으로 자인하는 124,700,000원은 아래에서 보는 AE계좌의 주식 내지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않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위 금액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보고 계산한다(원래 채무자는 H에 대하여 F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채무자와 피고는 채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한편, 피고는 채무자의 J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70,000,000원 중 85,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가 H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F아파트를 증여받게 되면서, 결국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않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